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1
------------	------

발의연월일 : 2016. 10. 18.

발 의 자 : 장병완 · 손금주 · 김두관

송기석 · 김수민 · 이동섭

조배숙 · 김동철 · 김중로

홍익표 · 이채익 · 신용현

유성엽 · 조정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이후,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벌이고 있는바,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판매사업자는”을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으로 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전력거래) ① ~ ③ (생략) <u><신 설></u></p> <p>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p> <p>1. ~ 5. (생략) <u>⑤ (생략)</u></p>	<p>제31조(전력거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 ----- ----- -----. 1. ~ 5. (현행과 같음)</p> <p><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p>